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관련 제도와 법

신청기관 ▶ 한국공인노무사회

I.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제정 취지 및 연혁

1.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일본에는 사회보험노무사(社会保険労務士)라는 전문자격사가 존재한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공인노무사와 유사한 전문자격사로서, 노동 및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전문가로서 기업경영의 3요소(사람, 물자, 자본) 가운데 사람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동 및 사회보험에 관한 제문제, 특히 연금 상담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에 관한 전문가이다.

2. 사회보험노무사 제도의 연혁¹⁾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헌법 제27조에서 보장된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동기준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실업보험법(현재의

1)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2011仕業最前線レポート 社会保険労務士編」, 7~9면 참조, <http://www.lec-jp.com/sharoushi/guide/miryoku/pdf/frontline01.pdf>(최종접속일: 2016.11.02).

고용보험법의 전신이 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의 정비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1954년의 후생연금보험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하여 사회보험제도도 확충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종 단체나 개인이 기업의 노무관리나 사회보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비즈니스로 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사업주에 대하여 현저하게 보수를 청구하거나 노동쟁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업계단체를 결성하여, 업계의 건전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무관리사’, ‘사회보험사’ 등의 민간자격이 등장하였고, 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탄생되기 전까지 일정 정도의 역할을 완수해왔다.

이러한 민간자격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적자격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1966년 이후 법제화의 움직임이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행정서사나 세무사 등 기존의 자격사와의 조정을 거친 후, 1968년 5월에 의원입법의 형태로 사회보험노무사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자격사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관리사’와 ‘사회보험사’를 합친 것으로 새로운 공적인 전문가로서 ‘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탄생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발족된 후 현재까지 8차례의 법개정²⁾을 통하여 그 업무 및 권한이 확대되어 왔다. 먼저, 사회보험노무사제도의 발족 당시의 권한은 ① 노동사회보험제법령에 근거로 하는 장부나 서류의 작성(사회보험노무사법 제2조 제1항 1호·2호), ② 노동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도(제2조 제1항 3호)만이 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로 인정되어 있었다.

1978년의 제1차 사회보험노무사법 개정으로 행정관청 등(예를 들어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등)에 대한 서류제출절차의 대행권(제2조 제1항 1호의 2)이 인정되게 되었다. 1986년의 3차 법개정으로 각종 절차(신청, 신고, 보고 등)이나 행정관청 등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하여 사회보험노무사가 ‘대리인’으로 대응하는 권한(이른바 ‘사무대리’)이 인정되었다(법 제2조 제1항 1호의 3).

2) 가장 최근의 법개정에 대한 내용은 후술한다.

2002년의 제6차 법개정으로 ‘알선’ 대리권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개별노동분쟁 해결촉진법에 근거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알선’ 절차의 대리권을 사회보험노무사에게 승인하였다. 또한 2005년의 제7차 사회보험노무사법의 개정으로 특정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창설되었고, 이와 더불어 분쟁해결절차 대리업무(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리권)³⁾의 확충이 도모되었다(법 제2조 제1항 1호의 4~1호의 6). 이 분쟁해결절차 대리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색채가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정사회보험노무사에 한하여 행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2조 제2항).

이러한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의 과정을 거쳐 사회의 니즈에 발맞추기 위하여 사회보험노무사의 역할은 계속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

3. 사회보험노무사의 종류 및 주요 업무

노동 및 사회보험 문제의 전문가로서 ① 서류 등의 작성대행, ② 서류 등 제출대행, ③ 개별노동관계분쟁의 해결절차(조정, 알선 등)의 대리, ④ 노무관리나 노동보험 및 사회보험에 관한 상담 등을 행하는 것이 사회보험노무사이다.

사회보험노무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사회보험노무사법 제2조 및 제27조).

- ①신청서⁴⁾ 등의 작성
- ②제출대행
- ③사무대리
- ④분쟁해결절차 대리업무(특정사회보험노무사에 한정)
- ⑤장부류의 작성

3)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수단으로서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DR)가 활용되게 되었는데, 이 ADR제도는 당사사간의 대화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특정사회보험노무사가 개별노동관계분쟁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노무사는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라, 개인으로 사무소를 열어 많은 기업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전문가로서 사회보험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사회보험노무사’와, 기업이나 단체에 속하여 해당 기업 내에 한정된 사회보험노무사로서의 업무를 행하는데 주로 대기업의 관리부문에 속하여 기업 내에서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전업 종사하는 ‘근무사회보험노무사’가 있다. 또한 ‘특정사회보험노무사’⁵⁾는 노사간의 트러블을 재판 외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나 근로자 등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행하는 자로, 정해진 연수를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들 사회보험노무사가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노동사회보험절차업무, 둘째, 노무관리의 상담지도업무, 셋째, 연금상담업무, 넷째, 분쟁해결절차대리업무, 다섯째, 보좌인의 업무이다.

먼저, 노동사회보험절차업무로는 ① 노동사회보험의 적용, ② 노동보험의 년도갱신, ③ 사회보험의 산정기초신고, ④ 각종 조성금 등의 신청, ⑤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의 조제, ⑥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등이다. 노무관리의 상담지도업무에 관해서는 ① 노무관리 및 인재육성 등에 관한 상담, ② 인사, 임금, 근로시간의 상담, ③ 경영노무감사 등이다. 연금상담업무에 대해서는 ① 연금가입기간, 수급자격 등의 확인, ② 재정청구서

4) 신청서 등이란, 노동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에 근거로 하여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연금사무소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회보험노무사법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가 취급할 수 있는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법률에 근거로 하는 서류가 있다.

- 시간외 · 휴일근로에 관한 협정신고서(노동기준법 제36조)
- 근로자 사상병 보고(노동아전위생법 제100조)
- 노동보험 개산 · 확정보험료 신고서(노재보험법 제24조 외)
-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서(고용보험법 제7조)
- 고용조정조성금(휴업 등) 지급신청서(고용보험법 제62조 외)
- 건강보험 ·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서(건강보험법 제35조 · 후생연금법 제13조) 등

5) 특정사회보험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① 사회보험노무사가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가 주최하는 소정의 연수(전체 63.5시간의 특별연수)를 수강하고, ② 특별연수의 마지막 날에 실시되는 시험(분쟁해결절차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 ③ 사회보험노무사 명부에 특정사회보험노무사라는 취지의 부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분쟁해결절차대리업무에 대해서는 ① 알선신청에 관한 상담 및 절차, ②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진술, ③ 상대방과의 화해를 위한 교섭 및 화해계약체결의 대리 등을 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좌인의 업무로는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한다.

II.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주요 내용⁶⁾

1968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사회보험노무사법은 총 여섯 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제1장 총 칙(제1조~제7조)
 제2장 사회보험노무사시험 등(제8조~제14조)
 제2장의2 등 록(제14조의2~제14조의13)
 제3장 사회보험노무사의 권리 및 의무(제15조~제23조의2)
 제4장 감 독(제24조~제25조의5)
 제4장의2 사회보험노무사법인(제25조의6~제25조의25)
 제4장의3 사회보험노무사회 및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제25조의26~제25조의50)
 제5장 잡 칙(제26조~제31조)
 제6장 별 칙(제32조~제38조)
 부 칙

1. 총칙

사회보험노무사법은 사회보험노무사제도를 규정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도모하고, 이로서 노동 및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의 원활한 실시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무

6) 사회보험노무사법(社会保険勞務士法)에 대한 조문은 <http://law.e-gov.go.jp/htmldata/S43/S43HO089.html> 참조.

7) 현재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주무관청은 후생노동성이다.

의 건전한 발달과 근로자 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사회보험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정통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행해야 한다는 직책이 제1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제1장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제2조), 자격(제3조), 결격사유(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험노무사의 시험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제2장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의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반교양과목의 학습을 마친 자 또는 동법에 따른 단기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1호), 옛 고등학교령에 따른 고등학교 등과 옛 대학령에 따른 대학예과 또는 옛 전문학교령에 따른 전문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수료한 자(2호), 사법시험 예비시험 또는 고등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3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 및 특정독립행정법인 또는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 또는 직원으로 행정사무에 상당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자(5호), 행정서사가 되는 자격을 가진 자(6호),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법인 또는 변호사 혹은 변호사법인의 업무의 보좌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자(7호),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오로지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자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의 임원으로 노무를 담당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자(8호), 노동조합의 직원 또는 법인 등 혹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종업자로 노동사회보험제법령에 관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자(9호) 등은 사회보험노무사의 수험자격이 있다.

또한 사회보험노무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가졌는지 판정하기 위하여, 노동기준법 및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보험의 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노

무관리, 기타의 노동 및 사회보험에 관한 일반 상식에 대한 과목에 대하여 시험이 실시된다(제9조).⁸⁾

그리고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후생노동대신(한국의 장관에 해당)이 실시하는데, 후생노동대신은 사회보험노무사시험을 관장시키기 위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위원을 임명한다(제10조). 후생노동대신은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에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의 2).⁹⁾

3. 사회보험노무사의 권리 및 의무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제3장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보험노무사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특히 본장에서는 부정행위 지시 등의 금지(제15조), 신용실추행위의 금지(제16조), 근무사회보험노무사의 책무(제16조의2),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사항(제16조의3), 개업사회보험노무사의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제18조), 개업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에 관한 장부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의무(제19조), 의뢰에 따르는

8)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은 실무경험 등으로 시험과목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수험신청과 함께 신청을 하면, 해당 시험과목의 면제가 결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시험이 면제된다(자세한 사항은 사회보험노무사법 제11조 및 별표 제2 관계).

-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노동사회보험제법령에 관한 시행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자
- ②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단체의 임원 혹은 종업자로서 노동사회보험제법령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자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보조인으로서 노동사회보험제법령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자로,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가 행하는 면제지정강습을 수료한 자
- ③ 일본연금기구의 임원 또는 종업자로서 사회보험제법령의 실시사무에 종사한 기간(일본연금기구의 설립 당시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는 사회보험청의 직원으로서 사회보험제법령의 시행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자
- ④ 전국건강보험협회의 임원 또는 종업자로서 사회보험제법령의 실시사무에 종사한 기간(전국건강보험협회 설립 당시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청의 직원으로서 사회보험제법령의 시행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자

9)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험노무사시험 공식사이트 <http://www.sharosi-siken.or.jp/index.html> 참조.

업무(제20조), 비밀을 준수할 의무(제21조), 업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제22조), 비사회보험노무사와의 제휴금지(제23조) 등을 규정한다.

특히 사회보험노무사는 전문가로서의 지식이나 입장을 악용하여 부정을 행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 제15조에서는 부정행위의 지시 등의 금지로, 사회보험노무사는 의뢰를 받은 기업 등에 부정행위에 대하여 지시를 하거나 상담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사회보험노무사의 신용 또는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6조).

또한 개업사회보험노무사는 사건의 명칭, 의뢰를 받은 연월일, 받은 보수액, 의뢰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사건의 개요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해야 하며, 장부 및 그 관련 서류를 2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제19조). 이와 관련하여, 개업사회보험노무사 등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36협정, 취업규칙, 산재보험·고용보험·사회보험관계 또는 조성금 관계의 서류 등을 작성, 제출대행 등을 할 때에는 명칭표시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시행규칙 제16조 등).

4. 사회보험노무사의 검사 및 징계처분

제4장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에 대한 감독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국, 후생국, 사회보험노무사회는 사회보험노무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지도를 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노무사법 제24조에서는 감독관청에 의한 보고 및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후생노동대신은 개업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사회노무사법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원을 그 사무소에 출입시켜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노무사회는 소속한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이 관계되는 법률 등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권고를 할 수 있다(제25조의33).

후생노동대신은 직책 또는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회보험노무사에게 일정한 징계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징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계고, 1년 이내의 업무 정

지, 실격처분을 동법 제25조에서 규정한다. 또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① 진정한 사실에 반하여 신성서 등의 작성, 사무대리를 하는 것, 또는 분쟁해결절차대리업무를 하는 것, ② 사회보험노무사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것, ③ 노동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것, ④ 사회보험노무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중대항 비행을 하는 것 등의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제25조의2, 제25조의3).

5. 사회보험노무사회 및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사회보험노무사법 4장의3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회 및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노무사는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 도도부현의 구역별로 회칙을 정하여 하나의 사회보험노무사회를 설립해야 하는데(제25조의26),¹⁰⁾ 이 사회보험노무사회는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 자질의 향상과 업무의 개선진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5조의26 2호). 사회보험노무사는 사회보험노무사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타 후생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받아야 하는데(제14조의2 제1항), 이 규정에 따른 등록을 받은 때에 해당 등록과 관계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도도부현의 구역의 사회보험노무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제25조의29).

또한 전국의 사회보험노무사회는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¹¹⁾는 사회보험노무사회

10) 일본의 행정구역은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都)는 도쿄도 도(道) 홋카이도 부(府)는 교토와 오사카 현(県)은 43개의 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회보험노무사회도 일본 전국에 각 47개의 사회보험노무사회가 존재한다.

11)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의 홈페이지를 참조(<http://www.shakaihokenroumushi.jp/>).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가 행하고 있는 주요한 노력으로서, ① 사회보험노무사무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② 경영노무진단서비스, ③ 사회보험노무사회 세미나, ④ 마이넘버 제도, ⑤ 공계약에서의 근로조건 심사, ⑥ 학교교육에 대한 협력, ⑦ 윤리연수, ⑧ 성년후견제도, ⑨ 동일본대지진에 관한 노력, ⑩ 건설업에서의 사회보험 미가입 대책 등에 힘쓰고 있다.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 자질향상과 업무의 개선진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노무사회 및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사회보험노무사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외에, 시험사무 및 대리업무시험사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5조의34). 특히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는 후생노동대신에게 사회보험노무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또는 그 업무를 통해 얻어진 노동사회보험제법령의 운영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제25조의38).

또한 후생노동대신은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에 사회보험노무사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데(제10조의2), 이러한 시험사무에 종사하는 임원의 선임(제25조의40), 사회보험노무사 시험문제의 작성 및 채점을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위원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제25조의41). 그리고 후생노동대신 및 기타 행정기관은 사회보험노무사법 및 노동사회보험제법령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보험노무사회 또는 연합회와 협력할 수 있다(제25조의46).

6. 기타 사항

상기의 규정 외에, 제5장은 잡칙으로서 사회보험노무사가 아닌 자는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명칭의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타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얻고 사회보험노무사법에서 열거하는 사무를 업으로 행해서는 안된다(제27조). 또한 개업사회보험노무사의 사용인 등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의2), 후생노동대신은 사회보험노무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습회 개최, 자료제공, 기타 필요한 원조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사회보험노무사의 범위반에 대한 형사벌에 대한 내용은 동법의 제6장 벌칙에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험노무사법에 위반한 사회보험노무사에게는 징계처벌과 함께 형사벌(징역 및 벌금)이 부과된다(제32조~제38조).

예를 들어, 보험금부 및 보험료에 관한 부정, 노동기준법, 직업안정법,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지시, 상담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2조). 또한 징계처분의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32조의2).

Ⅲ.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최근의 개정 내용¹²⁾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4년 6월 13일 제186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4일에 제187회 임시국회에서 가결성립, 2014년 법률 제116호로 공포되었다.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2015년 정령 제69호)이 2015년 3월 6일에 공포되어, 일부(사원 1명이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설립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를 제외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원이 1명인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설립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개정의 취지

최근 기업조직의 재편이나 인사노무관리의 개별화 등에 따라 개별노동관계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이전보다 더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보험노무사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보아 ①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단체가 행하는 개별노동관계분쟁에 관한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분쟁해결절차 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하고 또한 사회보험노무사명부에 그 취지를 부기를 받은 특정사회보험노무사가 단독

12) 「社会保険労務士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施行について」,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200000-Roudoukijunkyouku/20150330.pdf>(최종접속일: 2016.11.02).

으로 분쟁의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분쟁의 목적의 가액의 상한이 인상되는 것, ② 사회보험노무사가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보좌인으로서 출두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사원이 한 사람인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설립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2. 개정의 내용

1. 개별노동관계분쟁에 관한 민간분쟁해결절차의 분쟁목적가액의 상한액의 인상

- (1) 개별노동관계분쟁에 관한 민간분쟁해결절차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단체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 사회보험노무사가 단독으로 분쟁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의 분쟁의 목적의 가액을, 민사소송법 제3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60만 엔)에서 120만 엔으로 인상된다(개정법에 따른 개정 후의 사회보험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관계).
- (2) 본 개정은 특정사회보험노무사가 시행일(2015년 4월 1일) 이후에 수탁받은 사회보험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6에 관계되는 분쟁해결절차 대리업무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제1항 관계).

2. 보좌인제도의 창설

- (1) 사회보험노무사가 사업에서의 노무관리, 기타 노동에 관한 사항 및 노동사회보험제법령에 근거로 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보좌인으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두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법 제2조의2 관계).
- (2) 법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노무사가 사업의 노무관리, 기타의 노동에 관한 사항 및 노동사회보험제법령에 근거로 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보좌인으로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 진술을 하는 사무에 대하여,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이 그 사원 또는 사용인인 사회보험노무사에게 행하게 하는 사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이 위탁자에게 해당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사원 등 중에서 그 보좌인을 선임하게 해야 한다(제25조의9의2 관계).

(3) 사회보험노무사 및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이 법 제2조의2 및 제25조의9의2에서 규정하는 출두 및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뢰자에게 보수의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개정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사회보험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호의10 관계).

(4) 사회보험노무사 및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이 법 제2조의2 및 제25조의9의2에서 규정하는 출두 및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의무 제공에 대해서는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규제의 적용 제외가 된다(개정령에 따른 개정 후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제2 관계).

3. 사원이 1명인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설립 등이 가능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설립에는 2명 이상의 사원이 필요한 것을, 사원이 1명인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설립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법 제25조의6 등 관계). 또한 본 개정령에 따라,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및 각 시도부현 사회보험노무사회의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규정에 관계되는 회칙을 변경해야 한다.

IV. 요약 및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른바 노동3법이 정비됨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법적 권리가 된다. 여기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하게 노사간의 대립과 과업이 다발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의 일본경제는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되어 세수나 기업의 사회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사회보험이라고 불리우는 후생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보상액의 수준이 높아지고 관련제도 역시 복잡하게 되어 이러한 어렵고 번잡한 사회보험의 구조와 신청 및 급부에 관계되는 사무절차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회보험을 대응하는 전문가의 존재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인사, 노무, 총무부문의 업무를 행하는 직업이 생겨났다. 따라서 인사 및 노무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68년에 사회보험노무사법이 제정된 것으로서, 일본에서의 사회보험노무사라는 제도의 역사는 어느새 50년을 앞두고 있다.

2007년에 일본에서 ‘5000만 건의 사라진 연금’이라는 연금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컴퓨터에 보존되어 있는 국민 개개인의 연금 가입이나 수급 기록이 잘못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던 사건이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연금기록에 대한 불투명감과 연금을 담당하고 있던 당시의 사회보험청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연금에 대한 유일한 공적 자격인 사회보험노무사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고조되어, 사회보험노무사는 연금기록에 관한 무료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총무성이 연금기록의 검증위원회와 제3자 위원회를 마련했을 때 사회보험노무사가 전문가로 참가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일본연금기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는 길모퉁이 연금상담센터(街角の年金相談センター)를 마련하여, 연금의 상담 및 절차에 대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³⁾ 말 그대로 역근처나 쇼핑센터 내, 시청 가까운 곳, 주차장 등, 주민들이 찾기 쉬운 곳에서 연금에 관한 일체의 사항, 구체적으로는 ① 연금상담이나 각종 통지에 관한 문의, ② 개인의 연금급부에 관한 청구 및 각종 변경절차, ③ ‘연금수첩’, ‘연금증서’ 등의 재발행 접수, ④ 연금과 고용보험·산재·의료보험과의 관계에 대한 상담 등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⁴⁾

물론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는 계속된 법개정을 통하여 사회보험의 전문가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알선의 대리권 획득, 분쟁해결절차 대리업무와 능력담보조치, 노동관계분야의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의 역할의 증대 등을 통하여 노동분야 및 인사노무 컨설팅 분야 업무의 본격화 등을 통한 업무확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변호사법 제72조¹⁵⁾에 따

13) 종래에는 사회보험청(현재는 폐지)이 운영하고 있던 연금상담센터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연금상담센터는 2010년 1월 일본연금기구의 설립을 계기로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에 운영위탁되게 된 것이다.

14) 현재 길모퉁이 연금상담센터는 전국에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길모퉁이 연금상담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2015년도에 3개소의 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40개의 도도부현에 78개소가 마련되어 있다.

15) 변호사법 제72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자는 보수를 얻는 목적으로 소송사건, 비송사건 및 심사청구, 이의제기, 재심사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혹은 화해, 기타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또는 이러한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단,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법률사무의 대리료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업으로 행할 수 있었고, 따라서 노동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지원 중, 특히 해결에 관해서는 사회보험노무사가 행할 수 없는 업무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법제도의 개혁의 흐름속에서 변호사법 제72조의 예외가 확대됨에 따라, 특정사회보험노무사가 일정한 한도에서 개별노동관계분쟁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장래적으로 변호사와의 경쟁과 자격사간의 연계가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의 전통적인 역할, 즉 사회보험의 전문가라는 그 역할은 우리 사회에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세계 우수인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의 속도에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공적연금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불안은 고조되어 갈 것이다. 즉, 일본과 같이 사회보험의 전문가의 역할은 향후 계속될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 니즈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도 가까운 곳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전문자격사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상기와 같은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현재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와 유사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업무 분야를 사회보험분야까지 확대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얻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의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한 업무 및 지식의 고도화와 전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려는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기대한다.

박 수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국제학박사)

참고문헌

- 社会保険労務士法, <http://law.e-gov.go.jp/htmldata/S43/S43HO089.html>.
 社会保険労務士試験オフィシャルサイト, <http://www.sharosi-siken.or.jp/index.html>.
 全国社会保険労務士会連合会, <http://www.shakaihokenroumushi.jp/>.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2011仕業最前線レポート社会保険労務士編」, <http://www.lec-jp.com/sharoushi/guide/miryoku/pdf/frontline01.pdf>.
 「社会保険労務士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施行について」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200000-Roudoukijunkyouku/20150330.pdf>.

